

KMI 동향분석

VOL.150

2019 NOVEMBER

발간년월 2019년 11월(통권 제15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명화 국제수산연구실 실장

(jmh@kmi.re.kr/051-797-4571)

윤미경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안지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홍혜수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903)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과 지속가능하지 않는 어업 행위로 발생하는 보호 해양자원의 혼획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2006년 「매그너슨-스티븐 어업보존 및 관리법」 및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 개정, 2015년 IUU 어업 집행법 마련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어업 노력과 외국의 IUU 어업 식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법정보고서인 ‘국제 어업관리 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이하 IFM 보고서)’가 그것인데, 미국의 IUU 어업 억제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 IUU 어업국을 식별하고, 외국 정부의 IUU 어업 행위 시정 및 적절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협의 과정을 담는다.

격년으로 발표되는 IFM 보고서가 2019년 9월 NOAA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등 지역수산기구의 신규 가입, 대미 수산물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노력 촉구, 북극 중앙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서명 등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IUU 어업 정의에 따라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을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의 IUU 어업 위반 행위는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조치 위반과 미국 공유 어족자원의 과잉어획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보존관리 조치 위반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2017년 CCAMLR의 어장폐쇄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어구를 설치하여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였다.

한국이 해당선박의 귀항을 지시하고, 해당 어기말에 원양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를 60일간 정지하는 등 해당 위반 건 해결을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선주 또는 선사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몰수 조치도 없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UU 어업 식별국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IUU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정부가 취한 IUU 어업 근절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는지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조치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IUU 어업 근절 조치와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CCAMLR 해역의 IUU 어업 행위에 대한 여러 시정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양선사의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 규정이 징역, 벌금, 몰수 등 형사 처분 체계이기 때문에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정책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수한 과징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금을 조성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의 과학적 기여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입 개발도상국 과학자의 연구 활동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활동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IUU 어업 모니터링 강화에 대비하여 원양어업의 어획증명제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어획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CAMLR의 어획증명제도 불이행에 대한 개선 조치로 올해 7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의 50% 이상이 이뤄지는 태평양 해역의 어획증명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IUU 어업 확인은 미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 위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2019년 IFM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와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신규 가입을 포함해 태평양 해역에서만 총 11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WCPFC를 비롯한 태평양 해역에 대한 향후 미국의 IUU 어업 활동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제3국 EEZ에 입어하는 국내 어선의 IUU 어업 예방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2019년 미국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는 중국의 IUU 어업 활동을 인지하였으나 미국 국내법 한계로 인해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미국이 정의하는 IUU 어업에 타국 EEZ에서 발생한 IUU 어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머지않아 자국 법 개정을 통해 타국 EEZ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의 IUU 어업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제3국 EEZ 입어 어선에 대해서 연안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시 하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내 어선의 연안국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보고 강화, 원양 어획물의 교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국제사회 지속가능어업을 위한 리더십 발휘 근거 마련

■ 미국, 국제사회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미국은 수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의 개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SA)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어업 활동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 이하 MPA)’ 개정을 통해 미 행정부가 국제 어업관리 및 이행, 특히 IUU 어업과 지속가능하지 않는 어업 관행으로 인한 보호 해양자원의 혼획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MSA는 2006년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 MPA)’을 개정, IUU 어업에 관한 규정과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강화를 명시한 법 규정을 도입함²⁾
 - IUU 어업 집행법(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Enforcement Act of 2015)은 2006년 개정 이후 MSA상의 MPA 집행조항을 구체화하고, IATTC 개정 협정 및 FAO의 항만국 통제협정(PSMA)을 미국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 미국 매그너슨-스티븐스법과 공해 유자망어업모라토리엄법 609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2년 마다 의회에 법정 보고서인 국제 어업관리 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이하 IFM)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 IFM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IUU 어업에 관여한 어선의 선적 국가를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IUU 어업 식별 국가와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음
- 2009년 최초로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년 마다 발표되는 IFM 보고서는 올해 9월에 공개됨

■ IFM 보고서, IUU 어업 근절과 보호종의 혼획 최소화를 위한 미국의 다양한 노력 포함

- IUU 어업 근절과 관련해 미국 IFM 보고서에는 지역수산물기구의 신규 가입, 미국 수산물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노력 요구, 그리고 북극 중양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 서명 등 매우 광범위한 활동 내용을 담고 있음

1)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법은 1976년에 최초로 마련되었고 2006년에 재승인(reauthorization)됨. 주요 개정사항으로 연간어획량 한도(annual catch limits)의 설정, 과학통계위원회(Scientific and Statistical Committee)기능,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검토 절차에 관한 변화가 있음

2) <https://www.fisheries.noaa.gov/topic/laws-policies#magnuson-stevens-act>(검색일: 2019.8.25.)

- 2018년 3월 미국 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이하 NMFS)은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외국 어업의 해양포유류 혼획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해외어업 목록을 발표함.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의 수입 조항 이행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해외어업 목록에서 수출어업으로 분류된 어업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수산물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획국은 미국의 상업적 어업에 적용되는 조치와 효과성 측면에서 동등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 미국은 2017년 2월 남태평양 지역수산물관리기구(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와 남태평양 어업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에 신규로 가입함
- 2018년 북극 중앙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에 서명하였으며, 서명국에는 캐나다, 덴마크, EU, 아이슬란드, 일본, 중국, 한국 등이 포함됨

미국의 국제 IUU 어업 통제 위한 정책 메커니즘

■ IUU 어업 관여한 외국 어선 제재를 위한 미국 국내법 개정 및 신설

- 미국은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SA) 제609조³⁾와 2015년 IUU 어업 집행법⁴⁾을 통해 IUU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확인 및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국제 IUU 어업 규제 관련 법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한 ‘연방정부 TF(Federal Government Task Force)’ 및 ‘국가 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NOC) 상설위원회’ 등의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연방정부 TF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국방부, 법무부, 농업부, 보건복지부, 환경위원회, 예산관리국 등 14개 부처가 연합한 대책위원회로, IUU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NOC는 항만국 통제협정 이행사항을 점검함

■ ‘식별(identification)’·‘협의’·‘인증(certification)’을 거쳐 최종 IUU 어업국 결정

- IUU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MSA 제609조⁵⁾와 MPA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IUU 어업 국가의 식별, 인증 및 통보, 협의, IUU 어업 입증 절차, 정의 및 지침, 예산집행 권한 등을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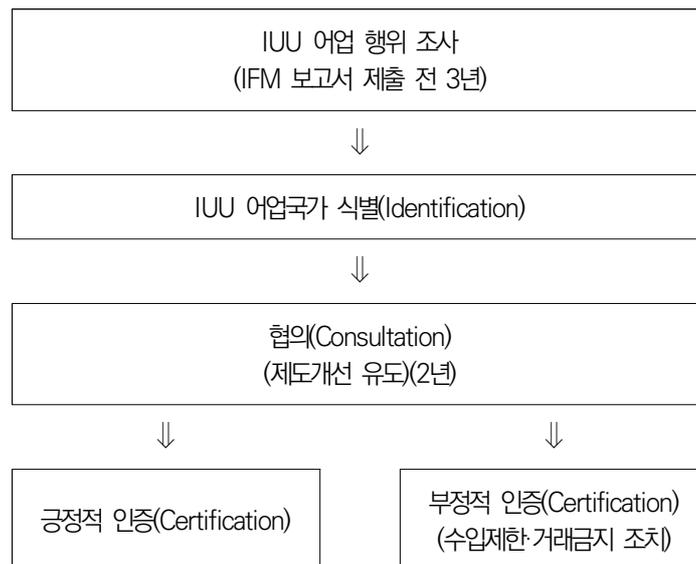
3) 16 U.S.C §1826j 참조

4)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Enforcement Act of 2015(IUU Fisheries Enforcement Act)

5) 16 U.S.C §1826j 참조

- 미국 NMFS는 IFM 보고서 제출 3년 전에 이뤄진 외국 어선의 IUU 어업 행위를 조사하여, IUU 어업국을 식별함
- ‘IUU 어업 식별국(identification nation)’은 ‘예비 IUU 어업국’으로도 명명되는데, 미국 NMFS가 IUU 어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예비 인증(preliminary certification)을 하고, 최종 인증(certification)으로 발표되기 전 해당국에 IUU 어업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IUU 어업 식별국은 2년간의 협의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IUU 어업의 ‘긍정적 인증(Positive Certification)’ 국가로 분류됨
- 반대로 같은 기간 IUU 어업 식별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 인증(Negative Certification)’으로 분류될 경우, 공해 유자망어업 이행법(High Seas Driftnet Fisheries Enforcement Act)에 따라 해당 기국 선박의 입항 거부,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 제한, 미 관할수역 내 통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⁶⁾
- 만약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시행 6개월 후에도 해당 국가의 IUU 어업, 부수어획, 상어 어획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은 WTO 규정 내에서 해당 국가의 전체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⁷⁾

그림 1. 미국 IUU 어업 국가 식별·인증 및 제재조치 집행 절차



6) 50 CFR §300.200-209

7) 50 CFR §300.205

■ 美 가입 국제협약의 위반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후 IUU 어업 확인

- 미국이 정의하는 IUU 어업이란 국제조치 위반, RFMO의 보존조치 약화, RFMO 비당사국의 보존 조치 약화, 공유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취약생태계에서의 파괴적 어업 행위, 미 EEZ 내 외국 어선의 조업 행위 등임
- 국제조치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가입한 국제수산물관리협정의 보존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위반 조치를 조사함. 미국은 <표 1>과 같이 9개의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대서양의 5개, 태평양의 11개, 남극 2개 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어 전 세계 모든 해역의 국제보존 협약의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NMFS 분석팀은 외국 어선의 IUU 어업 행위 식별을 위해 RFMO 이행조치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미 해경(United States Coast Guard, 이하 USCG), 외국 정부, 미디어, NGO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조사함
- 그 외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수산물관리협정상 IUU 어업이 성립되지 않거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해 IUU 어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체절차(alternative procedure)를 마련하여 IUU 어업 식별 및 인증이 가능하도록 함⁸⁾
 - 즉, 미국은 관할 RFMO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해상 IUU 어업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함⁹⁾

표 1. 미국의 해역별 국제협약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현황

구분	가입 협약	비고
글로벌 (9)	UN 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미국 회원국 아님
	UN 경계왕래성 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협정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001년 발효(90개국)
	공해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준수협정(FAO Compliance Agreement)	2003년 발효(42개국)
	IUU 어업 예방,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SMA)	2016년 발효 (EU 및 59개국)
	FAO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89개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83개국
	알바트로스 보존협정(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Albatrosses and Petrels)	미국, 옵서버로 참여
	상어보존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harks)	48개국 서명
대서양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53개국

8) 16 U.S.C. 1826j(d)(2)

9) 박민규, 미국 IUU 수산물 수입통제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5)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North Atlantic Salmon Conservation Organization, NASCO)	6개국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orth 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EAFC)	미국, 협력적 비회원국
	북서대서양어업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AFO)	14개국
	남서대서양어업위원회(Sou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SEAFO)	미국, 협약에 서명
태평양 (11)	중서부태평양어업위원회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26개국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15개국
	북태평양어업위원회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	8개국
	남태평양참치조약 (South Pacific Tuna Treaty)	17개국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21개국
	국제돌고래보존프로그램에 관한 협약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	14개국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NPAFC)	5개국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6개국
	태평양연어위원회 (Pacific Salmon Commission)	미국, 캐나다
	국제태평양넙치위원회 (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	미국, 캐나다
	태평양군도지역 고래류 및 고래류 서식지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Conservation of Cetaceans and their Habitats in the Pacific Islands Region)	15개국 서명
남극 (2)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25개국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4개국
서부 (2)	바다거북 보호 및 보존 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Sea Turtles)	16개국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물 프로토콜 (Specially Protected Areas and Wildlife Protocol, SPAW Protocol).	25개국
인도양 (2)	인도양참치위원회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31개국 (미국, 옵서버로 참여)
	인도양-동남아시아 바다거북양해각서 (Indian Ocean-South East Asian Marine Turt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5개국 서명
지중해 (1)	지중해일반어업위원회 (Gener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Mediterranean)	24개국(미국 미포함)

주 1 : 비교의 국가 수는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수임

주 2 : 국제협약 및 지역수산물기구의 회원국(member), 당사국(party)을 국가로 해석함

자료 : NOAA Fisheries,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p. 79, Annex 1 저자 요약 정리

지난 4년간 IUU 어업 식별 7개국, 대부분 '긍정적 인증' 획득

■ 미국이 식별한 IUU 어업, RFMO 보존조치 위반, 공유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2015년과 2017년 발표된 미국 IFM 보고서¹⁰⁾¹¹⁾에서 IUU 어업 식별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등 7개국이며, IUU 어업 주요 적발사항은 RFMO의 보존 관리 조치 위반, 미국 EEZ 침범, 공유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자국법의 제재조치 불충분 등임
- IATTC 해역에서 조업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은 주로 데이터 부이 근접 조업 금지(C-11-03), 참치 보존(C-12-01),부수어획(C-04-05 Rev 2) 조치 등을 위반함
- 러시아 어선은 CCAMLR 보존관리 조치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조업 시 환경보호(CM26-01), 시험조업(CM21-02), 면허발급 및 검사(CM10-02), 선박 및 어구 규정(CM10-01), 어장 폐쇄(CM31-02) 등의 조항임
- 포르투갈은 어획량 보고서 및 조업 일지를 오기하고, 사문서 위조, 망목 규정 위반 등 NAFO의 보존관리 조치를 적절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와 러시아는 미국 EEZ를 침범해 불법어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멕시코는 미국이 지정한 과잉어획 어족자원인 빨간통돔(red snapper) 등을 불법으로 어획한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에콰도르는 자국 법상 IUU 어업에 대한 조사기간 및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 후 6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으며 제재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IUU 어업국으로 식별됨

■ IUU 어업 식별국, 미국과 협의 및 시정조치 통해 긍정적 인증 획득

- IUU 어업 행위 확인 7개국은 지난 2년간 약 7회 이상 미국과 서면·대면 양자협의를 거쳐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알렸으며,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혀진 사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함
- 2015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IATTC 보존관리 조치에 부합하도록 자국 내 규제를 재·개정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해 긍정적 인증을 받음
 - 특히 에콰도르는 불법어업 행위의 정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소시효는 60일에서 12개월로 연장됨

10)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015 Report to Congress, 2015. 2.

11)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017 Report to Congress, 2017. 1.

- 에콰도르는 2017년 IFM에서 재차 불법 어업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된 불법 행위 13건에 대해 2014년부터 3년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금전 제재 조치를 내려 2019년 최종 긍정적 인증을 획득, IUU 어업국을 졸업함
-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포르투갈은 자국 어선의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면허 취소 혹은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해 2017년 긍정적 인증을 획득함
-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 해당 조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미국과 지역수산 관리기구에 제출해 증명함
- 멕시코는 어업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불법 어업 어선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했음에도 그 외 행정 조사 및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한 차례 부정적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빨간통돔 어업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 선박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 2019년 긍정적 인증을 얻음
- 멕시코는 2016년 9월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위반 행위를 한 선박 중 5~10척에 대해 우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017년 초까지 충분한 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함
- 불법 어업 어선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2017년 IFM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에 부정적 인증을 부여함
- 부정적 인증을 받은 이후, 2014년~2015년간 불법 어업행위를 한 어선 51척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37척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려 긍정적 인증을 얻음
- 러시아는 CCAMLR와 협의를 통해 보존관리 조치 위반 선박의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 폐쇄 후 조업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2019년 긍정적 인증을 받음
- 미국 EEZ 내 불법 어업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IUU 어업이 아님을 입증함

표 2. 미국 IUU 어업 확인 국가별 위반 사항 및 경과 조치

연도	국가	위반 사항	경과 조치
2015	콜롬비아	○ IATTC 보존관리 조치 위반 - 데이터 부이에 근접한 조업 금지 조항 위반(2014년) - 조업 중단 기간 중 무허가 운항(2013년) - 옵서버 커버리지 요구사항 위반 - 바다거북 부수어획 방지 관련 조항 위반 (플라스틱 쓰레기 무단 폐기)	- (2015.10.8.) 조업 시 데이터 부이와 상호작용 규제 마련 - (2016.11.21.) 무허가 운항에 대한 증빙 제출 ☞ 2017년, 긍정적 인증 결정

연도	국가	위반 사항	경과 조치
2015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TC 보존관리 조치 위반 - 데이터 부이에 근접한 조업 금지 조항 위반 -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참치 폐기(16톤) - 바다거북 부수어획 방지 관련 조항 위반 (플라스틱 쓰레기 무단 폐기, 부적절한 바다거북 구조) - 참치 무단 폐기 및 미끼로써 활용 ○ 국내법 제재조치 불충분 - 짧은 공소시효(60일)로 국내법의 실효적 집행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2.28.) 불법어업행위의 범위, 처벌, 공소시효(12개월) 규정 마련 - (2013.10.7.) IATTC 보존관리 조치에 부합하도록 각료합의문 개정(무단 폐기·어장 폐쇄 중 조업·데이터 부이와 상호작용 제재, 바다거북 방류 기준 등) - IATTC 보존관리 조치 위반 선박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보고서 제출 ☞ 2017년, 긍정적 인증 결정
2015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EZ 내 불법 어업 - 미국 EEZ 침범(13년 24척) - 공유 어족자원 과잉어획 (gag grouper, red snapper, gray trigger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5~10척에 대해 우선조치 (전체 위반어선에 조치를 취할 경우 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축소 조치) - 해상 및 육상 감시 강화 - 일부 지역 선박 자동식별 장치 설치 - 불법 어업 선박에 보조금 지급 중단 ☞ 시정조치 불충분 2017년, 부정적 인증 결정
2015	니카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TC 보존관리 조치 위반 - 바다거북 부수어획 방지 관련 조항 위반 (부적절한 바다거북 구조) - 데이터 부이에 근접한 조업 금지 조항 위반 -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참치 무단 폐기 (황다랑어 4.51톤, 가다랑어 2.61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거북 구조조치 사실 확인 후 법적 책임 면제 - 데이터 부이 상호작용에 대한 옵서버 기록 부재를 근거로 법적 책임 면제 - (2015.2.18.) 어획물 무단 폐기 선박 조사 후 법적 조치(벌금) ☞ 2017년, 긍정적 인증 결정
2015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AMLR 보존관리 조치 위반 - CCAMLR IUU 어업 목록 등록 어선(2척)의 불법 조업 (협약 해역에서 불법 조업, 금지 어구(자망) 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업 선박에 대한 처벌 조항 기 보유(불법 행위 시 면허 취소) - 불법 어업 및 허가문서 위조 선박의 등록 취소 ☞ 2017년, 긍정적 인증 결정
2015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O 보존관리 조치 위반 - 조업일지 및 일일 어획량보고서 오기 - 어획량 기록 및 라벨링 오기, 문서 위조 - 망목 규정 위반(망목 130mm 미만 어구 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5.) 조업일지 및 어획량 보고 관련 위반사항 확인 - (2013.4.) 비보고 어업 및 어획량 과소보고에 대한 벌금 부과 - (2014.7.-8.) 망목 규정 위반사항 없음 확인 - (2016.1.) 벌금 및 제재조치 ☞ 2017년, 긍정적 인증 결정
2017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TC 보존관리 조치 위반 -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참치 무단 폐기 - 바다거북 부수어획 방지 관련 조항 위반 (플라스틱 쓰레기 무단 폐기, 부적절한 바다거북 구조) - 고래상어 부수어획 -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은 무통보 운항 - 데이터 부이에 근접한 조업 금지 조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관리 조치 위반 선박에 대한 행정 조사 후 금전 제재 조치(13건) ☞ 2019년, 긍정적 인증 결정

연도	국가	위반 사항	경과 조치
2017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EZ 내 불법 어업 - 미국 EEZ 침범('14년 26척, '15년 25척) - 공유 어족자원 과잉어획(red snap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EZ 침범 선박 행정소송, 위반 행위가 확인된 37척에 벌금 부과 - 일부 지역 선박에 위성감시 장치 설치 - 불법 어업 선박에 보조금 지급 중단 (2016~2018년간 47만 달러 손실) - 해상 및 육상 감시 강화 - red snapper 조업 관련 규정마련 (체장, 어구, 어장, 선상 가공 금지 등) <p>☞ 2019년, 긍정적 인증 결정</p>
2017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AMLR 보존관리 조치 위반 - 일반 환경보호 조항 위반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 후 후속 행정조치 미비) - 조업 데이터 보고 사항 불일치 - 과학조사 및 시험조업 규정 위반 - 조업 허가 조건 미달(국제 무선호출 표지판 높이 미달, 보존조치 노력 부족, 조업 허가 선박 무단 교체) -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 미흡 - 금어기 중 불법 어업 ○ 미국 EEZ 내 불법 어업 - 미국 EEZ 내 0.5해리 침범, 무단 조업 -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미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AMLR 보존관리 조치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시정 조치 및 조업 중단 명령 - 어장 폐쇄 후 불법어업 선박 추가 교육 (CCAMLR 협의 사항) - 미국 EEZ 내 불법 어업 조사, 무혐의 결론(운항 기록, 선장 및 항해사 면담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p>☞ 2019년, 긍정적 인증 결정</p>

자료: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015, 2017 각 년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美, IUU 어업 식별국에 3개국 지정

■ 2019년 9월 IUU 어업 식별국, 에콰도르, 한국, 멕시코를 지정¹²⁾

- 2019년 9월 IFM 보고서에서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에콰도르, 멕시코, 우리나라이며, 위반 유형은 국제 보존관리 조치 위반, 미국 공유자원의 과잉어획임
- 에콰도르는 가국 어선에 대해 IATTC 결의안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결과의 보고 의무(C-11-07)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IUU 어업 식별국에 포함됨
 - 2016년 발생한 IATTC 결의안 부수어획(C-04-05), 참치 보존(C-13-01, C-17-02)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였으며, 감시가 미흡함
- 우리나라는 2017년 CCAMLR의 어장 폐쇄 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어구를 설치하여 CCAMLR 보존관 조치(CM31-02)를 위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IUU 어업 식별국에 등재됨
 - 한국은 이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항구로 귀환하도록 지시하고, 어기 중 60일 간 어업면허 및 선원

12)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019 Report to Congress, 2019. 9.

- 인증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벌금부과 및 어획물 압수를 비롯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조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한국은 어획증명 문서체계(CM10-05)를 위반해 해당 어선에서 조업한 이빨고기에 어획증명서를 발급, 불법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었음
- (멕시코) 과잉어획 어종인 빨간통돔을 포함한 공유 어족자원과 바다거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확인된 바 있음
- 미국 USCG는 위반 선박 및 어선원 체포,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하고 있으나, 불법어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함

표 3. 2019년 미국 IUU 어업 국가 목록

국 가	위반 유형	위반 사항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보존관리 조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017) IATTC 결의안 C-11-07 위반 * 자국 어선의 결의안 위반 조사통보 불이행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CCAMLR 해역 어장 폐쇄 조치 위반 ▪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 불충분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공유자원 과잉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EZ 침범, 과잉어획 어종 공유 어족자원인 빨간통돔 불법어획 ▪ 바다거북에 해로운 영향 확인

자료 :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019 Report to Congress, 2019. 9.

■ 중국 불법어업 행위, 美 IUU 어업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IUU 어업 식별국에서 제외

- 미국은 MSA와 MPA, NOAA 시행 규정에 의거하여 IUU 어업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기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IUU 어업 국가로 식별·인증할 수 없음
- 중국은 2016년~2018년간 아르헨티나, 세네갈, 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에콰도르, 페루 등의 EEZ를 침범하고, 불법어업과 상어 지느러미 절단 혐의로 다수의 선박이 나포됨
- 그러나 타국 EEZ에서 발생한 불법 어업 행위는 미국의 MPA와 NOAA 시행 규정에 정의되고 있지 않음
- NOAA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다수의 무국적 선박을 중국 국적선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정함
- 해당 무국적 선박 중 20척은 중국에 할당된 해상식별부호(Maritime Identification Digits, MID)가 포함된 해상 이동업무 식별부호(MMSI)를 사용했으며, 24척은 선체 측면에 적힌 'CHINA'가 발견됨

- 미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자국 법에 따른 IUU 어업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향후 NOAA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자국 원양어선에 대해 적절한 기국 통제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임

IUU 어업 억제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어획증명제 확대 불가피

■ IUU 어업 줄업을 위해서는 효과적 해결 여부, 조치의 향후 효과 가능성, 미국 기준과의 동등성 측면 등을 고려

- IUU 예비 어업국에서 IUU 어업국 해제 즉, 미국으로부터 IUU 긍정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FM 보고서에서 기술된 IUU 어업 활동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결되었는지(effectively addressed), 향후 IUU 활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국가 조치의 효과 가능성 정도(the likely effectiveness), 미국 시행 조치와 효과성 측면에서 동등성(comparable in effectiveness)이 입증되어야 함
- 미국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은 IUU 어업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기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CCAMLR 해역의 금어 기간 중 조업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해당 수산물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어획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역추적제 및 어획증명제 도입이 요구됨

표 4. 미국의 IUU 어업 긍정적 인증을 위한 고려 사항

구분	상세 내용
1	허가, 보고, 어선모니터링시스템 등 어획 및 노력 모니터링
2	옵서버 프로그램 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프로그램
3	수입 시 어획 수산물의 원산지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역 추적제도 및 어획증명서(Catch documentation)
4	IUU 어업 어획물의 교역 규제 또는 근절을 위한 교역 관련 조치(수입 및 수출 통제 또는 금지)
5	수산물이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약화시키지 않거나 또는 보존관리 조치와 일관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document)할 수 있는 프로그램
6	항만국통제조치
7	해상 및 선상검사계획
8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혼획 감소 및 저감 기준을 위반하는 IUU 어업활동이 있을 경우 혼획 감소 및 저감 전략 기술(예, 어구 제한)
9	어업활동의 모니터링, 통제, 감시 개선 시스템
10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는 충분한 제재 및 법적 기반 마련
11	관할 수역 이원지역에서 저층어업활동으로 인한 상당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취약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자료 : 미 관보 일부 내용 저자 번역 (URL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1/01/12/2011-507/high-seas-drift-net-fishing-moratorium-protection-act-identification-and-certification-procedures-to>) (접속 일자: 2019.10.9)

■ IUU 어업 줄업을 위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불가피

- CCAMLR 해역에서 국내 어선의 IUU 어업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의 한계를 설명하였으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은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 처분 위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 또는 민사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건에 대해 소관 행정부처가 불법 어획물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국내법 하에서 개인 소유 재산의 압류 또는 몰수는 기소 이후에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나 미국 설득에 실패함
- 이에 따라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함
- 현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 원양수산물의 어획증명서 확대 필요, WCPFC 및 미국 최근 가입한 SPRFMO와 NPFC 우선 고려되어야

- 현행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을 위한 고시」를 각각 마련·이행하고 있음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가 올해 7월 1일에 마련됨
- 향후 국내 원양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의 입증 방안으로 교역추적제 또는 어획증명서 확대 시행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남태평양 해역의 어획증명제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임
- 태평양 해역은 미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의 수가 11개로 가장 많으며, 가장 최근에 미국이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와 남태평양 어업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에 가입함으로써 해당 해역에서의 미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제3국 EEZ 입어 어선에 대한 IUU 어업 모니터링 강화 대비 필요

- 2019년 미국 국제 어업관리 개선보고서는 중국의 IUU 어업 활동을 인지하였으나 미국 국내법 한계로 인해 IUU 어업 식별국으로 지정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함
- 미국이 정의하는 IUU 어업에 타국 EEZ에서 발생한 IUU 어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미국이 머지않은 자국 법 개정을 통해 타국 EEZ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의 IUU 어업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제3국 EEZ 입어 어선에 대해서 연안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시 하에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어선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이 더욱 요구됨
- 또한 제3국 EEZ 입어 시 IUU 어업에는 어업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뿐만 아니라 연안국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의 혼획도 IUU 어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우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대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6.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URL: <https://www.kmi.re.kr/>